

##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
----------	----

제출년월일 : 1996. 1.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 안 이 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대전광역시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직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 요 골 자

녹지기금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직위를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간사는 “녹지과장”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각각 변경함. (안 제5조)

### 3. 참 고 사 항

-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 대전광역시직제규칙 제16조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5 조(위원회 구성)①(생략)</p> <p>② 위원장은 <u>부시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시본청의 관련 실·국장과 각구청장 및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녹지과장</u>이 된다.</p>	<p>제 5 조(위원회 구성)②(현행과 같음)</p> <p>② ----- <u>행정부시장</u> ----- ----- ----- -----</p> <p>③ ----- ----- <u>공원녹지과장</u> -----</p>

## 참 고 사 항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행정 부시장과 정무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부시장

가. 시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 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나. 시소속 공무원의 지도·감독

○ 대전광역시 직제 규칙

제16조 (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에 환경보호과·청소과·하수과·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국장은 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보호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청소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하수과장은 토목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大田廣域市綠地基金造成吳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1996年 1月 30日

文 教 社 會 委 員 會

大田廣域市綠地基金造成 및 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審 查 報 告

1996. 1. 30.  
文教社會 委員會

### I.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6年 1月 18日 大田廣域市長

나. 回 附 日 字 : 1996年 1月 18日

다. 上 程 日 字 : 第49回 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第 3次 文教社會 委員會 ('96. 1. 30)

上程, 審查, 議決

### II 提案說明 要旨 (提案說明 : 環境綠地局長)

#### 1. 提 案 理 由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대전광역시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직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2. 主要骨子

녹지기금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직위를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간사는 “녹지과장”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각각 변경함 (안 제5조)

## Ⅲ.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金鎮鎬)

-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는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1992년 9월 16일 시 조례 제 2242호로 제정된 조례로

- 동 조례중 개정코자 하는 제5조(위원회 구성) 제2항중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1995년 7월 18일 조례 제2488호로 1인의 부시장을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두도록 개정되어 업무관련 부시장인 행정부시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동조 제3항중 간사를 “녹지과장”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은 대전광역시 직제규칙이 1995년 6월 16일 규칙 제2007호로 직제가 “녹지과장”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개정되어 업무담당과장인 공원녹지과장을 간사로 하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IV. 討 論 要 旨 : 省 略

V.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省 略

VI. 審 查 結 果 : 原 案 可 決

VIII.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